

회사법 개정 서두르자



최완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우리 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의 상법을 의용하여 사용하다가, 1962년 최초 우리 고유의 상법을 제정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금융시장 기능이 아닌 정부지배하의 은행을 통해 자금을 배분하는 관료주도의 개발국가 모델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과 주식 소유의 집중 현상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자본시장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재벌이라는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경제성장, 민주화, 세계화 등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기존의 개발국가 모델에 집착한 경제실적위주의 경제운용을 계속한 결과 회사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지 못하고 우리 경제는 1997년의 경제위기를 맞기에 이르렀다. 그로 인하여 우리 회사법은 IMF나 IBRD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1998년, 1999년, 2001년 잇달아 타율적으로 부분적인 개정을 하여야만 하였다.

IMF 위기를 벗어나자 법무부는 회사법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2006년과 2008년에 걸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2006년 개정안은 제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인하여 자동폐기되었고 2008년 회사법 개정안도 현재 각종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갈등 또는 무관심으로 인하여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개정작업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회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각계의 개정요망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상법 회사편 총 696개 조문 중 274개 조문을 개정하는 건국 이래 가장 방대한 개정사업이다.

그 결과, 기업지배구조에 대하여는 집행임원제, 이사의 자기거래승인범위 확대, 이사의 책임제도 개선 등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기업재무구조에 대하여는 주식종류의 다양화,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 사채제도의 개선,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회계규정 정비, 새로운 회사형태의 도입 등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이번 회사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경제의 중대과제이다. 우리 회사법은 이미 1980년대 경제성장, 민주화, 세계화 등으로 인한 기업현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회사법을 신속히 개정하지 아니하다가 1997년의 경제위기를 맞고, 국제금융기관에 의한 타율적인 회사법 개정을 하게 된 뼈아픈 경험이 있다.

현재 지구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 세계화의 흐름을 보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는 회사법의 개정을 더 이상 미루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회사법 개정안이 모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완벽한 법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계에서도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하지만 일단 큰 틀에서의 논의를 확정시킨 후 세부적인 조정을 거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이해관계 대립에 기한 세부적인 논쟁에 휩싸여 큰 숲을 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